

ORIGINAL ARTICLE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보호제도 고찰 -경제분석의 한계

이 윤·차은영^{1)*}

국립수산과학원, ¹⁾이화여자대학교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Economic and Legal Perspectives

Yoon Lee, Eun-Young Chah^{1)*}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Incheon 400-420, Korea

¹⁾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Abstract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many differences.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y's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NPAL, CALEC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natural protected area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Key words : Korea, North Korea, Natural Protected Area Law, Reunification, Economic cooperation

1. 서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노력은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며 생태계의 변화가 목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대한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웅변하고 있는 나방류의 몸 색깔의 변화는 자연환경속의 생물요소가 얼마나 치열하게 환경요인의 변화에 적응하는가를 보여 준다. 이러한 환경과 생물요소간의 상호작용

은 환경요인의 변화에 대한 생물요소의 끊임 없는 작용, 반작용의 결과로 생물요소의 생존과 번식,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요인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Barton et al., 2007).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서 자연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산업기지 건설과 물류기지와 간선도로망 등의 건설에 따른 대규모 토목사업 뿐 아니라, 산업기지 배후의 도시건설

Received 19 November, 2014; Revised 10 December, 2014;

Accepted 11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Eun-Young Chah, 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Phone: +82-2-3277-2797

E-mail: echah@ewha.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의 보급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규모 주택 건설과 신도시가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위의 배후 신도시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 등을 포함하여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이러한 남북한을 망라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분단국체제와 남북한이 경쟁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그 규모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개념 자체가 서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울러 환경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공해방지라는 인간 및 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였으며, 실질적인 활동은 매우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에서 벌어진 페놀유출 사건이나 시화호 방조제 건설, 새만금단지의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급격히 변화되고, 국민은 정부에게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마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와 환경의 공공재로 인식 전환이 가능하게 된 정부의 축적,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이슈 대두와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서 환경보전필요 등으로 파괴된 환경을 개선, 복원하고 더 이상의 오염으로부터 자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1995).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단이 되고나서 60여년이 지난 이즈음에도 환경보호에 관한 북한사정에 대해서는 정보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몽골이나 러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기구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다변화하고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직접 맞닿아있는 북한과의 협력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정보의 미비는 실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하

고 마련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Kim, 2010).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단체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일에 대한 염원은 항구적이며, 언제나 통일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지하고 있는 현대경제학의 흐름 속에서 통일비용을 미래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현재의 부채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경복원과 관련된 비용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비교적 정치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환경협력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좋은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자연보호법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향후 이루어질 환경관련법제의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펴낸 「북한법령집」에 수록된 북한의 환경관련 법제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연보호구법」의 각 장과 조문을 다른 북한법령 및 우리나라 법령과 대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1. 북한 「환경보호법」의 이해

북한의 법체계에서는 1992년 개정된 헌법에 처음으로 환경조항이 신설되었다. 북한 「헌법」 제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규정한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환경법체계는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5호인 「환경보호법」 제정으로 첫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어,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헌법」에 환경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Kim, 2010). 「환경보호법」은 기존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환경법 체계 안으로 단일규범화 한 것으로(Lee and Chah, 2014), 산업화와 도시화, 자원재분배제도의 무력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 등의 사회문제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북한의 대외고립 탈피,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사회적 협력,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 전략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Kim, 2010). 이런 대내외적인 필요성외에도, 「환경보호법」의 제정은 환경문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법의 제정 이후 다양한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있다(Kim, 2010; Lee and Chah, 2014). 주요한 자연환경보호관련 법령으로는 「수산법」(1995년 1월 18일 채택),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1995년 12월 13일 채택), 「바다오염방지법」(1997년 10월 22일 채택), 등이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법 체계는 북한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하며 자연보호구역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 북한의 정치제도를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법령체계가 갖는 의미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Han, 2008). 이와 함께 북한의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Han, 2008; Han et al., 2007), 실효성 있는 규정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이 많은 것도 북한 법제의 실제 적용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보호법의 꾸준한 개정 및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법령이 차례로 제정되거나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의 책무,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에 참여 등을 통한 환경정책의 방향전환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Han, 2008; Han et al., 2007; Kim, 2010; Yun and Ji, 2006). 특히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된 「환경보호법」에서 이념적 색채가 희석된 것은 주목해야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Han, 2008). 또한 북한 법령체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법령 자체는 물론 시행에 관한 실질적인 결과나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보 확보 노력과 향후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한다(Lee and Chah, 2014; Yun, 1993).

북한의 자연보호관련법령으로는 환경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법」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하위법으로 자연보호구역 지정, 관리, 조사를 위한 개별법으로 「자연보호구법」이 있다.

「환경보호법」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어, 1999년 3월 4일 수정보충, 2000년 7월 24일 수정, 2005년 4월 19일 수정보충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각각 이루어졌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a). 현재 「환경보호법」은 모두 50개 조문으로 되어, 제1장 ‘환경보호의 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제1조 ‘환경보호의 성격’에서 북한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인민대중의 행복권 추구이나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게 환경보호와 관리의 책임을 지우고 환경보호관리사업을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u et al., 2006; Han et al., 2007; Kim, 2010; Lee and Chah, 2014). 이와 함께 각 조에서 환경보호대책의 계획화 원칙과 도시 및 산업시설의 합리적 배치(제3조), 공해방지대책의 우선 수립 및 공해방지 기술수단의 현대화(제4조), 인민의 환경보호관리 원칙과 자율적 참여(제5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제8조), 환경보호법의 적용대상(제9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특이하게도 「환경보호법」에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의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Kim, 2010).

제2장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자연보호구의 선정(제11조), 보호대책 수립(제12조), 자연풍치,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제13조, 제 14조) 및 땅의 침하방지 및 지하수 개발피해 방지(제15조), 자연생태계 파괴금지(제16조)와 함께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 휴식터의 건설과 녹지조성(제17조), 환경보호를 위한 대중운동(제18조)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환경보호기준준수(제19조),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금지(제20조-제37조) 행위를 오염원이나 환경매체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호

법」 제 4장에는 이와 같은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국가의 지도통제 명시(제38조-제40조, 제46조), 환경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연차계획의 수립시행(제41조), 환경영향평가(제42조),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제43조), 과학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제44조-제45조), 민형사상 보상 및 책임(제47조 - 제 5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의 총 50개 조항 중에서 제2장을 중심으로 6개 조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 환경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비중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1조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선정’에서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내각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호구역과 함께 이보다 강화된 것을 보이는 특별보호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조문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보호구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3조에서 자연 풍치를 보호하고, 제14조에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하도록 하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환경보호법」에서 총론에서의 보호구역을 조사,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수산법」(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d)이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e) 등에 각각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자연보호구법」으로 단일화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c). 이 밖에도 바다의 일정한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데, 이것은 「바다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b).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실행 법령으로서 「자연보호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를 통해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 층에서도 북한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북한의 법령체계에 대한 정보의 부재, 실질적인 관심의 적음 등을 이유로 자연환경 보호 정책과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연보호구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한요인은 향후 북한과의 연구교류 활성화나 공동자연보호활동과 같은 정치사회 외적인 교류 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통일된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대비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법령이나 제도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에서 북한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Han et al., 2007; Lee and Chah, 2014).

2.2. 북한의 「자연보호구법」

북한의 자연보호 기본정책과 관련된 법은 「자연보호구법」(국가정보원, 2010c)이 있다. 「자연보호구법」은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45호로 채택되었으며 모두 5장으로 구분되어 전문 43조로 구성되어있다(Appendix 2). 기본법에 해당하는 「환경보호법」과는 달리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채택되었다. ‘정령’은 1998년 북한의 「헌법」 개정으로 법의 채택, 수정 시에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사용하는 입법체계이다. ‘정령’의 형태로는 헌법의 위임사항(내각의 구성, 행정구역 지정 및 개편 등)이나 부문법의 채택 시에도 사용된다(Yu, 2011). 북한의 입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 북한의 ‘법령’은 최고인민위원회의가 채택하는 최고수준의 법을 지칭하며, 입법형식은 성문법 형태의 ‘법’과 문건형식인 ‘~에 대하여’가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의 상이나 동일용어의 상이한 함의는 북한의 법령을 이해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Yu, 2011). 따라서 입법형식이 ‘법’인 경우,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통해서 채택한다. ‘부문법’은 북한 「헌법」이 남한의 성문법체계를 갖춘 법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로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의해 채택되고, ‘중요부문법’이 아닐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채택한다(Yu, 2011). 이미 북한의 「환경보호법」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의 법령체계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의 형태와는 달리 당이나 군에 의한 결정, 명령, 지

시 등의 형태로 입법하는 예가 상당하다. 따라서 성문법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차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2.2.1. 자연보호구의 기본

「자연보호구법」의 제1장은 제1조에서 제8조로 구성되었다. 제1조는 「자연보호구법」의 사명」에 관한 조항으로 자연보호구의 설정, 조사, 관리에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여 인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자연보호구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자연보호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자연의 모든 요소를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구역」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 「자연보호구법」은 자연환경의 「모든 요소」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이미 선언적일 수밖에 없다. 제3조는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연보호구의 성과를 계승, 개선 발전시키는 국가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자연보호구법」의 제정이전에도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pendix 1; Son, 2007). 제4조는 「자연보호구」의 설정원칙을 규정하여, 자연보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조는 자연보호구의 상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연보호구관리사업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인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관리방안의 현대화, 과학화, 국제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2.2. 자연보호구의 설정

「자연보호구법」의 제1장에서 자연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일반적인 사항을 선언한 뒤에, 각 장을 통해서 자연보호구의 설정, 조사, 관리 및 자연보호구사업의 지도통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호구법」의 제2장은 자연보호구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으로 제9장부터 제18조까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에서는 자연보호구의 설정에 관한 조문으로, 자연보호구의 설정은 자연

보호구대상을 정하는 중요사업으로 규정하고 내각이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연보호구의 종류와 자연보호구를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자연보호구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명기하고 있다. 원시림, 동식물의 집중분포 지역,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의 동식물 서식지, 자연경관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호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1조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자연보호구」의 범위를 정할 때 해당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각이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주체이나, 이제 구체적인 「자연보호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관기관으로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상정하고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제12조 이후의 조문은 자연보호구의 선정, 변경, 심의, 등록, 변경, 기능구역 및 생태통로의 설치 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제13조와 제15조에서는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변경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제기하고 내각이 승인하도록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6조에서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제17조에서는 중심구역이나 완충구역과 같은 자연보호구내의 기능구역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자연보호구들사이에 생태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2.3. 자연보호구의 조사

「자연보호구법」의 제3장에는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조문이 있다. 자연보호구 조사의 주관기관과 조사사항이나 조사방법, 기록, 조사구역의 설정과 조사정형의 통보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호구가 설정되고 나면 지속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제19조). 제20조에는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지리적환경의변화와 대상생물에 종류, 분포 및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항목도 있다. 이러한 조사수단의 현대화, 과학적 조사의 체계적 수행 등은 제21조에서 규정하며, 조사과정중의 자료는 기록부

에 기록하고, 자료를 없애지 말 것도 규정(제22조)하고 조사결과에 정기적으로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에 보고(제24조)하도록 되어있다.

2.2.4. 자연보호구의 관리

자연보호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4장에서 관리체계구축, 관리기관,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자연보호구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모든 보호대상을 원상대로 보존증식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리체계, 관리기관 지정, 관리계획 수립과 집행, 서식지 보양 및 방역, 번식,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의 관리규범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보호구의 특성에 맞게 정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였다(제25조). 자연보호구의 관리 주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등이 되었으며(제26조), 자연보호관리기관은 자연보호관리계획을 5-10년 주기로 작성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7조). 제28조에서는 자연보호구의 경계표식은 물론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자연피해로부터 자연보호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자연보호관리기관이 하도록 규정하였다(제29조). 제30조와 제31조를 통해 동식물의 서식조건을 보장하고 방역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전염병이나 병해충 발생할 경우에 방역을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식물의 계획적 번식과 외래 동식물 번식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벌목, 사냥과 채집, 광산이나 채석장 같은 지형의 변경, 굴착 및 개간 등과 같은 행위를 자연보호구에서 금지시키고(제32조), 자연보호구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의 통보(제35조)도 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역 중심구역에서는 과학연구 등만 가능하며(제33조), 완충구역에서는 과학연구 외에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제34조).

2.2.5.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자연보호구법」의 제5장에서는 자연보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규정과 벌칙,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제36조에서 제43조까지 총 9개 조항에 담고 있다.

제36조에서는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환경보호정책 집행을 근본담보로 인

식하고 국가가 현실발전에 맞추어 자연보호구사업에 개선힌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에서 제40조까지는 자연보호구사업의 기관별 업무담당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자연보호구사업의 지도는 내각의 지도아래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이 담당하며(제37조), 국가계획기관 등은 보호구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장하게 하고 다른 사업에서 돌려쓸 수 없도록 하였다(제38조). 아울러 교육기관이나 출판보도기관 등은 과학지식의 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제39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자연보호구사업의 감독통제권한을 명시하고 책임을 부여하였다(제40조).

제41조에서는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의 파괴나 환경파괴 시,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며, 제42조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이나 관계자 및 인민에 대한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제4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 형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 북한 「자연보호구법」의 시사점과 한계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은 2009년 11월이 되어서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법제화 되었다. 비교적 최근에야 법제화가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Appendix 1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자연보호지역은 역사가 그리 짧은 것은 아니다. 1954년 묘향산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백두산(1959년), 구월산(1976년), 금강산(1976), 칠보산(1976), 관모봉(1993년), 낭림산(1995년), 오가산(1995) 등 2008년 현재 8개의 자연보호구가 지정되어있다. 동물보호구로는 공계, 대흥을 1959년에 지정하였으며, 금속, 천불이 1976년, 송원, 청학대, 휘색봉이 1993년에 각각 지정되었다. 북한은 또한 바다새보호구로 나진/선봉시 선봉군 알섬(1959년), 강원도 통천군 알섬(1959년), 평북 정주시 대감도, 평북 선천군 랫도, 평북 정주시 운무도, 덕도 등을 1976년에 지정하기도 하였다(Won, 1993). 이와 같은 자연보호구의 설정은 문헌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Kong, 2002; Son, 2007; Won, 1993). 정보가 미흡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정의 변경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북

한에 대한 정보 미흡은 북한관련 연구의 커다란 약점의 하나이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Han, 2008; Han et al., 2007; Lee and Chah, 2014).

「자연보호구법」은 기본법의 성격보다는 실제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제2조의 경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며, 더욱이 이러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한다는 것은 이미 실현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중요성이나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환경요인이 광범위하고 모호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기관에서의 법령이행을 위한 조문해석에 통일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의 법령은 우리나라와 법령체계가 달라서 법령안에 국가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이나 행정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경관련 법에서도 볼 수 있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b). 북한의 법령이 입법기관에 의한 법령 제정과 행정부에 의한 집행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당 우선의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an, 2008; Kim, 2010; Yu, 2011). 또한 북한의 환경 법령의 적용사례나 행정집행의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고(Han, 2008),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게 된다(Kong, 2002). 아울러 북한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하여 선행 연구결과나 탐문, 답사, 공개자료, 언론 매체 보도, 관련된 법조문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명백하다(Han, 2008; Han et al., 2007; Kong, 2002; Lee and Chah, 2014). 특히 중앙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이나 규제행위는 사회적 파급효과나 경제적 생산 활동 등에 영향을 주고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를 “자연의 모든 요소를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지정된 여러 종류의 자연보호구를 설정, 조사,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기여도 필요하다. 실제 제6조에서 ‘전 인민적인 자연보호구관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전 인민의 참

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가동원체제에 의하거나 국민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참여고취 등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중의 사회참여 방식의 하나인 비정부기구의 활성화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전문가나 자원봉사자, 민간인의 적극적인 활동은 자연보호구역내외의 불법행위감시나 변화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많은 나라에서 NGO는 정부기구와 함께 국가정책을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도 이미 진입하고 있는 적지 않은 국제 NGO는 전인민의 참여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활동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회체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문에서의 NGO가 정치적 성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NGO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지속을 통한 환경협력부문에서의 진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지속적 교류 시도와 국제협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참여는 자신의 주변을 돌보고 미래의 자산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서 매우 기본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제NGO의 활동이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제38조에 의하면 자연보호구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국가계획 기관 등은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보장되는 사업은 매우 강력한 실행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문은 사문화하기가 쉽다. 특히 ‘자연보호구’와 같이 일정 지역 내에서 행위를 금지시키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능동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시킨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규범이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보호를 통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개선하거나 복원하는 문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제안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염 방지시설에 비하여 복원 되어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하여 매우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법령의 확보, 정책의 채택과 시행, 자연보호사업의 시작과 완료, 경제효과의 지연과 가시적 성과의 구현 등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공공재인 환경에 대한 경제적 계량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Kwon, 2007). 비용편익분석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입법과정을 거치고, 구체적 정책목표가 수립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비용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 내지 계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 기법 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분석방법에는 환경영향평가, 경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비용효과분석, 환경피해평가, 환경위험평가 등이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가방법은 경제영향평가로 특정 오염규제수단이나 복원수단 등이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실업률 및 고용률, 국민경제 내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과 수입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영향평가분석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모형이다. CGE 모형은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등 경제의 가능한 모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모형이다(Kwon, 2007).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북한 경제에 대한 자료에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실질적인 분석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피해보상이나 복구 및 개선에 투입된 비용의 경제사회적인 손익은 수량화하기가 쉽지 않다(Lee and Chah, 1996).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관련 정보의 취득은 필요하다고 하겠다(Lee and Chah, 2014). 특히 거시적인 자료는 물론 미시적인 경제정보를 확보함도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의 법령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해서, 통일을 통한 정치적인 결합이후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부문에서의 통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간 제도 통합을 위한 북한 법령체계의 이해와 개별법에 대한 검토와 숙고는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보호구역은 국제기구에서도 다양한 관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자연보호구역은 남한의 자연보호구역과 통합되어 운용되고 관리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관리체계, 조사, 관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

4. 결론

북한의 「자연보호구역법」은 자연보호구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보전하기 위한 법령이다. 자연보호구사업은 내각의 통일된 지도아래 중앙국토환경정보보호기관의 지도감독으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자연보호구를 설정하고, 변화상황을 알기 위해서 관리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매 5-10년 주기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며, 자연보호구사업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국가계획기관이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연보호구의 환경파괴 등에 대한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이 있다. 자연보호구사업이 갖는 북한 경제내의 영향분석을 위한 자료가 매우 미비하며, CGE 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분석방법 활용을 위한 정보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법령제도의 통합을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법령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감사의 글

저자들은 논문의 체계와 질 향상을 이루어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직 중인 황도현 연구원의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논문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서해 연안어업 및 환경생태조사” (RP-2014-ME-060)과제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본 논문에 포함된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References

- Barton, N. H., Briggs, D. E. G., Eisen, J. A., Goldstein, D. B., Pattel, N. H., 2007, Evolution, 1st ed.,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Cold Spring Harbor, New York, 18-35.
- Chu, J. M., Jung, H. S., Park, K. A., 2006, Forum of enviro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Seoul, 1-23. (in Korean)
- Han, S. W., 2008, Recent activity and goal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North Korea's legislative research, 11, 1-19. (in Korean)
- Han, S. W., Jo J. H., Lee, C. H., 2007, A study on environmental legal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oul, 1-29. (in Korean)
- Kim, J. S., 2010, A study on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North Korea, in: 2010 Research on comparison of leg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I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91-143. (in Korean)
- Kong, W. S., 2002, Biogeographic feature of North Korean ecosystem,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1,157-172. (in Korean)
- Kwon, O. S., 2007, Environmental economics, 2nd ed., Bakyounsa, Seoul, 325-337. (in Korean)
- Lee, Y., Chah, E. C., 1996, The marine pollution as an economic problem - the case study of harmful algal blooming, Ocean Research, 18(2),173-181.
- Lee, Y., Chah, E. C., 2014,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North Korea -legisla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s and Safety, 20(6). (in Korean, in Press)
- Ministry of Environment, 1995, National plan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Gyeonggi, 1-30. (in Korean)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2013 White paper of environment, Gyeonggi, 363-376. (in Korean)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a, Environment Protection Law, in: Legal document of North Korea Part I, Seoul, 357-365. (in Korean)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b,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Legal document of North Korea Part II, Seoul, 248-251. (in Korean)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c, Natural Protected Area Law, in: Legal document of North Korea Part II, Seoul, 310-318. (in Korean)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d, Fisheries Law, in: Legal document of North Korea Part I, Seoul, 674-682. (in Korean)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e,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 Protection Law, in: Legal document of North Korea Part II, Seoul, 37-41. (in Korean)
- Son, K. W., 2007, Nor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and reality, Lectures on reunification issue 16, Seoul, 30-47. (in Korean)
- Won, B. O., 1993, Natural ecosystem of North Korea -protection system of vertebrates, in: Protection of ecosystem in North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Seoul, 1-54. (in Korean)
- Yu, W., 2011,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and its understanding, Reunification and Law, 6, 50-111. (in Korean)
- Yun, K. K., 1993, Environmental policy, system of environmental laws and mean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Study, 5(4), 236-270. (in Korean)
- Yun, H., Ji. Y. H., 2006, A stud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2000) in North Korea, Environmental Law Research, 28(2), 237-271. (in Korean)

Appendix 1. Natural Protected Areas in North Korea*

구 분	명 칭
생물권 보호구역	백두산(1989)
자연공원	구월산(1995), 금강산(1995), 금송호(1995), 묘향산(1995), 칠보산(1995)
자연보호구	묘향산(1954), 백두산(1959), 구월산(1976), 금강산(1976), 칠보산(1976), 관모봉(1993), 낭림산(1995), 오가산(1995)
동물보호구	동계(1959), 대흥(1959), 금속(1976), 천불(1976), 송원(1993), 청학대(1993), 휘색봉(1993)
식물보호구	맹산 흑송(1959), 멸약산(1959), 신미도(1959), 장산꽃(1959), 덕류산(1976), 수양산(1976), 양덕 버섯(1976), 황포 만삼(1976), 추애산(1996), 차일봉(1976)
바다새보호구	선봉군 알섬(1959), 통천군 알섬(1959), 정주시 대감도(1976), 선천군 랫도(1976), 정주시 운무도(1976), 정주시 덕도(1976)
습지보호구 (이주성 조류보호구)	나진만(1995), 문독(1995), 손봉(1995), 신도(1995), 웅진(1995), 용연(1995), 이원만(1995), 청단(1995)
해안자원 보호구	나권 Ear Shell(1996), 나진만(1996), 이원만(1996), Sean Oyster(1996)
경관보호구	덕류산(1995), 서해막(1995), 송원저수호(1995), 송진산(1995), 수풍호(1995), 용문-백룡(1995), 운파호(1995), 원봉호(1995), 위원저수호(1995), 장진강호(1995), 장진호(1995), 태청호(1995), 풍소호(1995)

*본 부록은 Son (2007)의 논문중 “표4. 북한의 자연보호지역”에서 기본틀을 가져왔다. 일부 이름은 다른 논문을 참고하여 첨삭하였다.

Appendix 2.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by North Korea

법령내용	조 항	조 문
목적 및 정의	제 1 조 (사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원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정의)	-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 자연보호구에는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 것이 속한다.
보호구 설정 및 관리원칙	제 3 조 (성과 공고발전원칙)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환경보호정책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수많은 자연보호구들이 설정되어 자연환경보호사업과 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
	제 4 조 (설정원칙)	- 자연보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를 거점으로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 국가는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를 설정하고 그 수를 늘여나갈도록 한다.
	제 5 조 (조사원칙)	- 자연보호구의 조사를 바로하는 것은 자연보호구에서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 국가는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사의 과학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법령내용	조 항	조 문
	제 6 조 (전인민적 참여원칙)	- 자연보호구관리사업은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다. -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연보호구를 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 7 조 (현대화, 과학화원칙)	- 국가는 자연보호구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이 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국제협력 제 8 조 (국제 교류와 협조)	- 국가는 자연보호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내각의 책임	제 9 조 (자연보호구설정기관)	- 자연보호구의 설정은 자연보호구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 10 조 (설정대상지역)	- 자연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정할 수 있다. 1.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2. 동식물종이 집중 분포되어있는 지역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 동식물이 있는 지역 4.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
자연보호구 설정절차	제 11 조 (범위설정)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내오려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설정승인신청서의 제기)	- 자연보호구를 내오려는 기관은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에는 보호구의 이름과 보호대상, 목적, 위치, 면적, 보호구로 정하려는 지역의 특징과 현 상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13 조 (설정승인신청서의 심의)	-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평가심의회위원회를 열고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 해당 지역을 자연보호구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자연보호구의 등록)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설정할 때, 대한 내각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자연보호구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양식과 방법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 15 조 (자연보호구의 변경)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자연보호구의 이름이나 면적 같은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 자연보호구의 이름, 면적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자연보호구평가심의회위원회 조직)	-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관련한 평가심의를 위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자연보호구평가심의회위원회를 둔다. - 자연보호구평가심의회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인력들로 구성한다.
	제 17 조 (자연보호구의 구역설정)	- 자연보호구에는 그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구역 같은 기능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태통로	제 18 조 (생태통로설정)	-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인접한 자연보호구들사이에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령내용	조 항	조 문
자연보호구 조사 및 자료 관리	제 19 조 (자연보호구의 조사기관)	-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 수 있다.
	제 20 조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	- 자연보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조사한다. 1. 지질, 지형, 토양, 기후 같은 자연지리적환경의 변화상태 2. 동식물의 종류와 구조, 분포상태, 이동정형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 동식물의 마리수와 분포상태 4. 자연보호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적인 요인들
	제 21 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조사수단을 현대화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조사 자료의 기록)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과정에 발견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
	제 23 조 (조사구역의 설정 및 기재설치)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구역을 따로 정해놓고 필요한 기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조사정형에 대한 통보)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정형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에 자연보호구는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자연보호구 관리방안	제 25 조 (관리규범 및 관리체계수립)	- 자연보호구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자연보호구안의 모든 보호 대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한 규범방도이다. -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범을 바로 정하고 정연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26 조 (자연보호구관리기관)	- 자연보호구의 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의 관리 분담을 바로하고 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자연보호구관리계획)	-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은 5~10년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28 조 (자연보호구의 표식)	-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 경계표식을 하고 필요한 장소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 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연피해방지)	-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서 산불을 엄격히 방지하며 자연 피해로부터 자연보호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제 30 조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 및 방역)	-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동식물의 서식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예찰 및 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동물전염병,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 31 조 (동식물의 번식)	-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안의 동식물을 계획적으로 번식시켜야 한다. - 자연보호구에서 외래종의 동식물은 번식시킬 수 없다. - 풍토 순화시킨 외래종의 동식물을 번식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 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내용	조 항	조 문
	제 32 조 (금지사항)	- 자연보호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나무를 베는 행위 2.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3.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4. 탄광, 광산, 채석장 같은 것을 개발하는 행위 5. 땅을 파거나 개간하는 행위 6.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경관을 파괴할 수 있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7.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8. 그 밖에 자연보호구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
자연 보호구 내 구역설정	제 33 조 (자연보호구 중심구역의 질서)	-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는 인원의 출입과 건물, 시설물의 건설을 금지한다. - 과학연구 같은 목적으로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활동 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제 34 조 (자연보호구 완충구역의 질서)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연보호구의 완충구역에 들어가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상현상 통보	제 35 조 (이상 현상 통보)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보호구에서 이상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자연보호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도통제	제 36 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37 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	-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자연보호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지원 및 보급	제 38 조 (자연보호구사업 지원보장)	-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사업에 돌려줄 수 없다.
	제 39 조 (과학지식보급, 대중교양)	-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보호구에 대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널리 진행 하여야 한다.
감독통제	제 40 조 (감독통제)	-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연보호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법령내용	조 항	조 문
법적 책임	제 41 조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42 조 (행정적 책임)	-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인력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피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자연보호구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사업과 방역사업을 잘 하지 않아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자연보호구에 승인 없이 외래종을 번식시켜 생태계를 파괴시켰을 경우 5. 자연보호구 중심구역, 완충구역의 질서를 어겼을 경우 6. 제3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43 조 (형사적 책임)	- 이 법 제4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인력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